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31호 2020. 6. 3. (수)

##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0-110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2
- 정선군 고시 제2020-111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소로3-20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5
- 정선군 고시 제2020-127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9
- 정선군 고시 제2020-128호 정선군 공영버스 운임 조정 결정(안).....10

##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0-672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소로2-31호, 소로3-43호) 실시계획 공람·공고.....12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0-7호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5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0-110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5월 22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 군도7호선(사북~직전)이 2021년 도로개설 완공을 목표로 공사진행 중으로, 향후 노선 개설시 정선군 남부권을 관통하는 주간선도로인 국도38호선(영월-고한·사북-태백)과의 연결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국도38호선과 군도7호선의 연계 도로를 신설하여 지역간 접근성 향상을 통해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고한·사북도시지역

1)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총괄표(금회 변경사항)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합계	기정	1	499	2,994	-	-	-	-	-	-	1	499	2,994
	변경	3	734	5,277	-	-	-	1	349	2,967	2	385	2,310
소로	기정	1	499	2,994	-	-	-	-	-	-	1	499	2,994
	변경	3	734	5,277	-	-	-	1	349	2,967	2	385	2,310

※ 신설 2개소, 변경 1개소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2	54	8.5	국지 도로	349	소로 2-53 사북리 337-1도	광장 1 사북리 356-238잡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499	소로 3-3 사북리 452천	지구단위계획구역계 사북리 산143-11임	일반 도로	-	강고26호 (79.2.8)	
변경	소로	3	4	6	국지 도로	176	소로 1-3 사북리 452천	소로2-53 사북리 337-1도	일반 도로	-	강고26호 (79.2.8)	
신설	소로	3	40	6	국지 도로	209	소로2-54 사북리 348전	주거지역 경계 사북리 산143-16임	일반 도로	-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소로 2-54	◦도로신설 - B=8.5m L=349m	◦ 국도38호선~군도7호선 연결도로 설치에 따른 도로시설 신설
변경	소로 3-4	소로 3-4	◦도로변경 - L=499m→176m, 감) 323m	◦ 국도38호선~군도7호선 연결도로(소로2-54) 설치를 위한 주변도로 정비에 따른 도로시설 변경
신설	-	소로 3-40	◦도로신설 - B=6m L=209m	◦ 국도38호선~군도7호선 연결도로(소로2-54) 설치를 위한 주변도로 정비에 따른 도로시설 신설

2) 공간시설

◦ 광 장

-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국도38 사북1광장	교통광장	사북읍 사북리 350대 일원	8,670	증)1,131	9,801	강고 제83호 (02.4.15)	
변경	2	하이원 진입광장	교통광장	사북읍 사북리 356-2도 일원	4,080	증)4	4,084	강고 제83호 (02.4.15)	

-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국도38 사북1광장	◦ 면적 증가 - A:8,670㎡→9,801㎡(증 1,131㎡)	◦ 국도38호선~군도7호선 연결도로(소로2-54) 설치를 위한 교차로 정비에 따른 광장 면적 증가
2	하이원 진입광장	◦ 면적 증가 - A:4,080㎡→4,084㎡(증 4㎡)	◦ 국도38호선~군도7호선 연결도로(소로2-54) 설치를 위한 교차로 정비에 따른 광장 면적 증가

라.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정선군 고시 제2020-111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소로3-20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강원도 고시 제134호(1985. 12. 14)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소로3-20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2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82-10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소로3-20호선) 사업
- 2) 명 칭 :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소로3-20호선) 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연장·폭원	기시행	금회시행	
도로	소로 3-13호선	L=71.0m, B=6.0m	-	L=71.0m, B=6.0m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 2)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1)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 2) 준공예정일 : 2020.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권 리의종류 및 내용
1	정선읍 봉양리	276-4	도	264	2		정 선 군			
2	"	276-5	대	9	9		정 선 군			
3	"	279-6	대	20	19		정 선 군			
4	"	280-5	대	21	15	정선읍 봉양리 282-6	진 순 택			
5	"	280-6	대	30	13		정 선 군			
6	"	282-3	도	91	7		국(국토교통 부)			
7	"	282-5	대	65	3	정선읍 봉양리 282-6	전 학 규			
8	"	282-10	대	19	10		정 선 군			
9	"	282-11	대	34	27		정 선 군			
10	"	283-5	대	123	5	정선읍 봉양리 284-2	김 옥 기	봉양리 209-3	정선군 산립조합	근저당권설정
11	"	283-10	대	20	20		국(기획재정 부)			
12	"	283-11	대	29	29		정 선 군			
13	"	284-3	대	114	11	정선읍 비봉안길14-17	배 해 랑	봉양7길 34	정선농업협동조 합	근저당권설정
14	"	284-7	대	4	4		정 선 군			
15	"	284-8	대	40	40		정 선 군			
16	"	284-10	대	36	36		정 선 군			
17	"	284-11	대	5	5	정선읍 봉양리 284-6	김 도 근	봉양7길 34	정선농업협동조 합	근저당권설정
18	"	284-12	대	20	20	정선읍 비봉안길14-17	배 해 랑	봉양7길 34	정선농업협동조 합	근저당권설정
19	"	284-13	대	11	11	정선읍 봉양리 284-6	김 도 근	봉양7길 34	정선농업협동조 합	근저당권설정
20	"	303-4	도	2,618	179		국(국토교통 부)			
계		20필지		3,573	465					

## ◎ 지장물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주소	성명
1	봉양리	282-5	주택	스멘트블럭	m <sup>2</sup>	17.0		정선군
2	"	282-1	주택	스멘트블럭	m <sup>2</sup>	13.0		정선군
3	"	280-2	차고	합석슬레이트	m <sup>2</sup>	4.0	정선읍 봉양리 220-8	박건영외3인
4	"	280-5	담장	벽돌(H=1.8)	m	16.3	정선읍 봉양리 280-1	전순택
5	"	279-1	담장	벽돌(H=1.8)	m	10.7	정선읍 비봉안길 14-10	이경화
6	"	283-5	주택	벽돌구조	m <sup>2</sup>	7	정선읍 봉양리 283-5	김옥기
7	"	284-8	창고	블럭스레트	m <sup>2</sup>	7	정선읍 봉양리 284-2	이금득
			화장실	블럭스레트	m <sup>2</sup>	2.3		
			담장	벽돌(H=1.7)	m	14.0		
8	"	284-10	주택	스멘트블럭	m <sup>2</sup>	21		정선군
9	"	284-12	창고	블럭슬라브	m <sup>2</sup>	4.8	정선읍 비봉안길 14-17	배해량
			화장실	블럭슬라브	m <sup>2</sup>	2.64		
			담장	벽돌(H=1.7)	m	6.3		
10	"	284-7	화장실	블럭슬라브	m <sup>2</sup>	3	정선읍 봉양리 422-1	최부순외1인
11	"	284-11	창고	블럭슬라브	m <sup>2</sup>	15	정선읍 봉양리 284-6	김도근
			화장실	블럭슬라브	m <sup>2</sup>	3.57		
			담장	벽돌(H=1.8)	m	15.0		

정선군 고시 제2020-127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의 멸실로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정 선 군 수

○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도로명주소	폐 지 일	폐지사유	비 고 (관련지번)
1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수류길 163-4	2020.05.29.	기존 건물 멸실	화암면 석곡리 585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민원과(☎560-217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고시 제2020-128호

정선군 공영버스 운임 조정 결정(안)

버스공영제 추진과 관련하여 정선군 공영버스 운임 조정 결정(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 고자 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정 선 군 수

○ 정선군 공영버스 운임

(단위 : 원)

구 분		현 행			조 정			비 고
요 금 제		기본요금+거리비례제			기본요금+구간요금제			
기본요금 (관내요금)	기본거리	8km			기본거리 없음			정 선 군 교통카드 소 지 자  (무료)
	일반버스	일반	청소년	초등	일반	청소년	초등	
		1,400	1,100	700				
좌석버스	일반	청소년	초등	1,000	500	500		
	1,800	1,500	1,100					
할인요금제	카드사용 할 인	일반	청소년	초등	카드할인 없음			
		100	80	50				

구 분		현 행			조 정			비 고										
시계 외 요금	요금구분		일반	청소년	초등	<table border="1"> <tr> <th colspan="3">고한~태백 구간요금</th> </tr> <tr> <td>일반</td> <td>청소년</td> <td>초등</td> </tr> <tr> <td>2,000</td> <td>1,000</td> <td>500</td> </tr> </table>			고한~태백 구간요금			일반	청소년	초등	2,000	1,000	500	정 선 군 교통카드 사용가능 (고한~두문동)  (무료)
	고한~태백 구간요금																	
	일반	청소년	초등															
	2,000	1,000	500															
고한 ~ 태백	면허시험장	1,400	1,100	700	<table border="1"> <tr> <th colspan="3">정선군 관내 (고한~두문동)</th> </tr> <tr> <td>일반</td> <td>청소년</td> <td>초등</td> </tr> <tr> <td>1,000</td> <td>500</td> <td>500</td> </tr> </table>			정선군 관내 (고한~두문동)			일반	청소년	초등	1,000	500	500		
	정선군 관내 (고한~두문동)																	
일반	청소년	초등																
1,000	500	500																
	태백	2,400	1,900	1,200	<table border="1"> <tr> <th colspan="3">고한~태백 시계 외 (두문동~태백)</th> </tr> <tr> <td>일반</td> <td>청소년</td> <td>초등</td> </tr> <tr> <td>2,000</td> <td>1,000</td> <td>500</td> </tr> </table>			고한~태백 시계 외 (두문동~태백)			일반	청소년	초등	2,000	1,000	500	정 선 군 교통카드 사용불가 (두문동~태백 )  (유료)	
고한~태백 시계 외 (두문동~태백)																		
일반	청소년	초등																
2,000	1,000	500																

구 분		현 행			조 정			비 고	
시 계 외 요 금	요금구분	일반	청소년	초등	정선~진부 구간요금			정 선 군 교통카드 사용가능 (정선~장전)  (무료)	
	덕송	1,400	1,100	700					
	남평교	1,700	1,400	850	일반	청소년	초등		
	나전	2,000	1,600	1,000	3,000	2,000	1,000		
	장평	2,400	1,900	1,200	정선군 관내 (정선~장전)				정 선 군 교통카드 사용불가 (장전~진부역) )  (유료)
	숙암	2,600	2,100	1,300					
	큰터	2,900	2,300	1,450	일반	청소년	초등		
	장전	3,300	2,500	1,650	1,000	500	500		
	막동	3,800	3,000	1,900	정선~진부 시계 외 (장전~진부역) 구간요금				
	화의교	3,900	3,100	1,950					
	수항	4,200	3,400	2,100	일반	청소년	초등		
	증평다리	4,300	3,400	2,150	1,000	500	500		
	수항	4,500	3,600	2,250	정선~진부 시계 외 (장전~진부역) 구간요금				
	황새집	4,700	3,800	2,350					
	취급소	4,900	3,900	2,450	일반	청소년	초등		
	마평	5,100	4,100	2,550	1,000	500	500		
	청심대	5,300	4,200	2,650	정선~진부 시계 외 (장전~진부역) 구간요금				
	주막거리	5,400	4,300	2,700					
	배나무재	5,700	4,600	2,850	일반	청소년	초등		
	한산	5,800	4,600	2,900	1,000	500	500		
진부터미널	5,900	4,700	2,950	정선~진부 시계 외 (장전~진부역) 구간요금					
진부역(KTX)	6,200	5,000	3,100						

#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0-672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소로2-31호, 소로3-43호) 실시계획 공람·공고

1. 강원도 고시 제134호(1985. 12. 14.) 및 강원도 고시 제15호(1992. 2. 13)로 최초 결정된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소로2-31호, 소로3-43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9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64-10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소로2-31호, 소로3-43호) 사업
- 2) 명 칭 :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소로2-31호, 소로3-43호) 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연장·폭원	기시행	금회시행	
도로	소로 2-31호선	L=161.0m, B=8.0m	-	L=111.83m, B=8.0m	
도로	소로3-43호선	L=136.0m, B=6.0m	-	L=136.0m, B=6.0m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 2)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0.12.31.

바.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2020. 5. 29~2020. 6. 12.)

사. 공람장소 : 정선군 도시과 (☎033-560-2468)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자.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정선읍 북실리	762-4	전	652.2	299.4		정 선 군	-	-	-
2	"	764-10	전	768.4	768.4		정 선 군	-	-	-
3	"	764-12	전	130.9	113.6		정 선 군	-	-	-
4	"	829-6	제	1,570.9	610.5		국(건설부)	-	-	-
5	"	829-8	구	4,589.1	32.5		국(국토 교통부)	-	-	-
계		5필지			1,824.4					

● 지장물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단 위	수 량	소유자	
							주소	성명
1	북실리	764-9	화장실	블럭합석	㎡	3.25	정선읍 용담셋길 29	최*규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0-7호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정선군의회에 제출되어 심사예정인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정선군의회회장

1. 추진배경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대상 적용범위 제한을 완화하여 보조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안 제4조)
  - (기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개정)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원
  -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 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매년 군 홈페이지에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명시하여 신청 홍보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서식 삭제 (안 별지 서식7호~서식11호)
  - 「임대주택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항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 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4조)

3. 예고기간 : 2020. 6. 1~6. 8(7일간 / 초일 불산입)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정선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의회사무과)
- 전 화: 033-560-2506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k3735872@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사용검사후”를 “사용검사 후”로, “분양주택단지”를 “10세대 이상의 분양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용승인일로”를 “사용승인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기타 군수”를 “그 밖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회(3월, 7월말)”를 “1~2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3호”를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호”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아니하면”을 각각 “않으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선군 건축조례」 제3조제1항”을 “「정선군 건축 조례」 제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조제4항”을 “제5조제1항제4호”로 한다.

- ① 군수는 매년 군 홈페이지에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명시하여 지원신청을 홍보한다.

제7조제6항 및 제14조제1항 중 “호 서식”을 “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서식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에서 <u>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 ----- <u>해당</u> ----- ----- ----- -----.</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법을 의제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3조(목적)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한다.</p>	<p>&lt;삭 제&gt;</p>
<p>제4조(대상단지 등) ① 지원대상은 <u>사용검사후</u> 10년이 경과(신</p>	<p>제4조(대상단지 등) ①----- <u>사용검사 후</u> -----</p>

청년도말을 기준으로 한다)된  
분양주 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한  
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에 의  
한 전기요금은 사용승인일로부  
터 적용한다. <단서신설 2009.1  
0.20.>

② (생략)

제5조(지원대상업무 등) ① 지원  
대상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  
리 업무 중 다음 시설물의 유지  
· 보수 및 입주자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제비용 등으로 한다.  
단,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1. ~ 4. (생략)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비용

② (생략)

③ 지원신청은 매년 2회(3월, 7  
월말)에 걸쳐 접수한다. 단, 예  
산의 규모에 따라 조기 종결할  
수 있다.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  
전관리 지원) ① 군수는 법 제3  
4조제3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  
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방지를

----- 10세대 이상  
의 분양주택-----.

----- 사  
용승인일-----.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업무 등)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정선군수(이하 “군  
수”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1~2회-----  
----- 다만-----.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  
전관리 지원) ① ----- 「공동  
주택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제3호-----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생략)

제6조(지원금액 등) ① ~ ③ (생략)

④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소규모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백만원 이하는 지원년도와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0.11.03.>

- 1. 시급히 보수하지 아니하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
- 2. 시급히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 3. 기타 입주자의 공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거 외의 시설

제7조(지원결정 등) ① 정선군수 (이하 “군수” 라 한다)는 매년 1월 신규로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각 관리주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금액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그 밖의  
-----  
-----  
-----  
----- 범위 -----  
-----  
-----.

1. ----- 않으면 -----  
-----

2. -----  
----- 않으면 -----  
-----

3. 그 밖에 -----  
-----  
-----

제7조(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매 년 군 홈페이지에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명시하여 지원신청을 홍보한다.

체 등(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미 구성된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에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홍보할 수 있다.

1. ~ 4. (생략)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정선군 건축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사항에 대해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통보한다.

1.·2. (생략)

3. 기타 군수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④·⑤ (생략)

⑥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2호 서식의 공동주택 전기요금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14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2호

1. ~ 4. (현행과 같음)

③ -----  
----- 「정선군 건축조례」 제3조제1항 -----  
-----  
-----  
-----.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제5조제1항제4호-----  
-----제12호서식  
의-----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  
-----  
-----제2호서

서식의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식의-----  
-----.

관 계 법 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단독주택
- 2. 공동주택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5. 문화 및 집회시설
- 6. 종교시설
- 7.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0. 2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